

정보 마당

유럽연합, 방사성폐기물을 수송에 관한 지침 개정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방사성폐기물을 유럽연합 내에서 혹은 외부로, 혹은 내부로 수송하는 것에 대한 규제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방사성물질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통제 및 사전 인허가 체계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의 수송 감독 및 통제에 관한 새로운 지침은 기존의 유라툼 지침 92/3을 대체하게 된다. 이번 지침으로 회원국간 수송에 관한 절차의 단순화, 일부 개념과 정의에 대한 명확화 및 추가, 이전 지침에서 빠진 부분의 보충, 다른 국제 기준과의 일관성 향상 등이 기대된다.

1992년 2월에 채택된 지침 92/3은 방사성폐기물이 수송되는 경로 상에 있는 EU 회원국에게는 수송에 관한 정보를 알리고 그 나라를 경유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방사성폐기물의 특정 장소로의 이동은 일절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북극 및 롬 협약(Lome Convention)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가 포함된다.

92/3 체계는 그동안 만족스럽게 기능해 왔지만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 다수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EC는 말했다. 현재 체계는 SLIM 절차(역내 시장을 위한 보다 간소한 입법: Simpler Legislation for the Internal Market)에 따라 평가되었으며, 이를 보다 사용자 친화적이고 공개성이 향상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이 수행되었다.

개정 지침은 92/3이 작성된 이후로 채택된 여러 가지 국제적인 협약, 기준, 법률 등이 고려되어 마련될 것이다. 또한 폐기물을 받게 되는 EU 비회원국이 수송에 관

해 협의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하여 일관성 없는 조항들도 수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침의 범위는 재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후핵연료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현재 재처리되지 않는 사용후핵연료는 방사성폐기물로 고려되고 있으며, 이의 수송은 지침에서 규정하는 통제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반면, 재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후핵연료는 그렇지 않다.

특히 기존의 지침은 폐기물의 EU 지역내 수송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의 적용은 다수의 국제적인 의무적 도구들, 예를 들면 IAEA에 의해 마련된 협약들 혹은 항공 및 해상 수송에 관한 국제협정 등과 연계되어 있다. 이들 의무적 국제 도구들은 1992년 이래로 상당히 많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들과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라툼이 IAEA의 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에 관한 공동협약에 가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관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한편, 개정 지침에서는 폐기물 수송에 대한 허가를 거부하는 규정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 작업이 기존 지침에는 대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EC는 말했다. 제안된 개정은 기존 수송 체계의 큰 출기에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폐기물 산업체, 회원국 혹은 EU 예산에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합리적이고 간소화된 절차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Nucleonics Week / Volume 45 / Issue 44 /
October 28, 2004